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1. 11 선고 2021가단512336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민

담당변호사 국중권

피 고 주식회사 B

변 론 종 결 2021. 12. 21.

판 결 선 고 2022. 1. 11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식회사 C(이하 'C'이라 한다)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(이하 '이 사건 자동차'라 한다)에 관하여 2017. 10. 16. 체결된 명의이전계약을 95,197,711원의 범위내에서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95,197,71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C은 2016. 5. 23.경 D 주식회사와 사이에 대출금액 177,000,000원으로 하여 상용차대출 약정을 체결하였다(이하 '이 사건 대출'이라 한다).

나. E 주식회사(이하 'E'이라 한다)는 2018. 6. 15.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통지하였다.

다. C은 2017. 10. 16.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명의이전계약을 체결하고 이전등록을 마쳐 주었다.

라. 원고의 C 및 F에 대한 이 법원 2018차전1201250 양수금 지급명령이 2018. 8. 1. 있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(C, F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5,197,71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).

[인정근거] 갑 제1 내지 6호증의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,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G조합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판단

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, 피고는 2017. 9. 27. 종전 채권자인 E에게 차량 대금인 90,000,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, 이 사건 자동차 매매를 두고 원고 또는 종전 채권자인 E에 대한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,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신동호

별지목록

자동차등록번호 : (변경후,)

제원 관리번호 : A01-1-00041-6739-2315

차명 : 뉴그랜버드

차종 : 승합 대형

차대번호 :

연식 : 2016

최초등록일 : 2016. 6. 22.

